

제 호

[] 인증기관 [] 검증기관 지정서

1. 기관의 명칭:
2. 대표자 성명:
3. 주소:
4. 제공업무:
5. 지정조건:

「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8조(제29조),
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6항(제26조제1항)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
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[] 인증기관, [] 검증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 직인